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기부행위의 금지 : 상시금지(선거운동기간은 특히 유의)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 (대법원 2009. 7. 23. 2009도1880)

기부행위의 원칙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

-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 - 의례적 행위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에서 시상(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때에 후원기관이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표창·포상자가 상금 수여자와 통모한 경우에는 통모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
- ❖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2008.10.2.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서 감사패 또는 표창 수여(부상 제외) 가능(2005. 8. 25. 선관위 회답)

기부행위의 예외 - 직무상 행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개최하는 행사의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 될 것이며, 기념품 등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나, 현수막·팸플릿에 단순히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무방함.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듯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짐.

요약 정리



행사 일정에 따라 사전 검토

- 공단의 모든 사업은 市 예산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며, 일반인들도 서울시의 사업으로 본다는 점을 인식할 것.
- 행사 진행 사전에 면밀한 검토 필요 (애매한 사항은 질의회신 사례 검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사전에 질의회신을 받을 것).



시장님 참석 행사 등에는 각별히 유의

- 별도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 명칭은 사용 불가.
- 시장님 참석 행사 등에 있어 사은품, 기부물품 등 제공 금지. 특히, 시장님 참석 중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외부업체와의 공동행사도 예외가 아님

- 외부단체의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

감사합니다
